

『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
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의 조직 명칭 변경사항 일괄 개정으로 자치법규
정확성 제고 및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외 10건의 기존 정부 조직
명칭 인용 조례 개정
 - 안전행정부 → 행정안전부
 - 중소기업청 → 중소벤처기업부
 - 미래창조과학부 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- 국토해양부 → 국토교통부
 -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11건의 조례에 대하여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